

서울특별시의회 「지방자치법」 등 개정촉구건의안

제안 설명

안녕하십니까?

도봉구 제1선거구 출신으로 운영위원회와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민주당 김용석 의원입니다.

서울특별시의회 「지방자치법」 등 개정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
동 건의안은 우리 지방자치제도가

분립형의 기관구성형태를 채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가 심의·의결한 예산안에 대한 단체장의 재의요구를 광범위하게 인정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·의결권을 무력화하고 있기 때문에 동 제도의 폐지를 위한 관련 법령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는 것입니다.

현행 지방자치법은 예산안과 관련하여

단체장에게는 편성·집행권을, 지방의회에는 심의·의결권을 부여하여 이미 양자가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해 작동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

- 그럼에도 불구하고,
법 제108조에서 지방의회가 심의·의결한 예산안에 대해
또 다시 단체장의 재의요구까지 인정함으로써
예산과 관련된 지방의회의 권한을
실질적으로 무력화하고 있습니다.

- 동 건의안에서는
헌법에도 없는 제도일 뿐만 아니라,
제도 자체의 실익은 없으면서
지방의회와 단체장 간의 갈등만 심화시키는
예산안 재의요구 제도의 폐지를 건의하여
전제와 균형의 지방자치 원리를
실질적으로 구현하고자 했습니다.

-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,
동 건의안에 대하여
본 의원의 발의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
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